

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설호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199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5. 23.

발의자 : 설호영 의원 외 15명

1. 개정이유

- 2021년 ‘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(2021~2025)’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이 ‘만 15세 이하 2자녀 가구’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출생 현상의 심화, 인구규모의 감소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다자녀 가정의 기준 범위를 확대함(안 제2조)
- 출생일 또는 입양일의 기준을 변경함(안 제4조)
- 출생축하금 지원금액 및 기준을 변경함(안 제5조 ~ 제6조)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복임1

-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|
| 4. 현행조례안 | : 복임2 |
| 5. 관계법령발췌서 | : 복임3 |
| 6. 예산수반사항 | : 복임4 |
| 7. 입법예고결과 | : 의견 없음 |

- 입법예고 : 2023. 5. 16. ~ 2023. 5. 22.
- 8. 부서검토의견 : 복임5

【붙임1】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

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“다자녀 가정” 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,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.

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부 또는 모,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
-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,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12개월 이상,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

제5조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.

- 둘째 아이는 300만원 이내
- 셋째 아이 이상은 500만원 이내

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- ① 축하금의 지원 신청은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설호영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61)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1. “다자녀 가정” 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	제2조 1. “다자녀 가정” 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,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.
제4조 ① 1. 부 또는 모,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2.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부 또는 모,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	제4조 ① 1. ----- ----- ----- 12개월 ----- ----- ----- 2. ----- 12개월미만인 경우에는----- ----- ----- 12개월 이상, ----- ----- -----
제5조 ① 2.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 이내	제5조 ① 2. ----- 아이는 ----- ----- 5. 셋째 아이 이상은 500만원 이내
제6조 ② 축하금의 지원 신청은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.	제6조 ② ----- ----- 1년 6개월 ----- ----- -----

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9-199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6월9일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다자녀 가정의 자녀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, 단서를 신설하여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조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.

□ 주요골자

-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“부 또는 모와,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,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정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”로 수정함. (안 제2조제1호)
- “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”를 “시에”로 수정함.
(안 제4조제1항제1호)

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다자녀 가정” 이란 부 또는 모와,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,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정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”를 “시에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</p> <p>1. “다자녀 가정” 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<u>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</p> <p>1. “다자녀 가정” 이란 <u>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,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</u>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</p> <p>1. “다자녀 가정” 이란 <u>부 또는 모와,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고, 주민 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정을 말한다.</u> <u>다만,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4조(축하금 지원대상) ①</p> <p>1. 부 또는 모,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<u>6개월 이상 안산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</u></p>	<p>제4조(축하금 지원대상) ①</p> <p>1.----- ----- ----- <u>12개월</u> ----- <u>안산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</u>----- -----</p>	<p>제4조(축하금 지원대상) ①</p> <p>1.----- ----- ----- <u>12개월</u> ----- <u>시에</u>----- -----</p>